



수수료 기준

◎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- 446호

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『수수료 기준』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6년 12월 28일
통상산업부 장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전력기술관리법(이하 “법”)이라 한다)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교육훈련, 설계사면허, 자격확인, 증명서, 확인서, 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수수료등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육훈련비

구 분	종 류	금액(원)
전 력 기술인	기술사, 기능장, 복급기술자	120,000
	기사1·2급, 다기능기술자, 기사1·2급, 고급·중급기술자	180,000
	기능사보, 초급기술자	220,000
감리원	중급감리원이상	180,000
	초급감리원	300,000

2. 설계사 면허발급 수수료

종 류	금액(원)
발 급	10,000
재발급, 기재사항 변경	5,000

3.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

종 류	금액(원)	
수 첩	발급	13,000
	재발급, 기재사항 변경	5,000
증 명 서	10,000	
확인서 발급(면당)	5,000	

제4조(수수료납부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